

석유비축관리규정

- 전문개정 1999-09-04
- 전문개정 2005-01-14
- 전문개정 2006-12-07
 - 개정 2009-11-30
- 타사규개정 2012-07-23
 - 개정 2015-07-30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비축석유 및 비축시설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비축석유 및 비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의무)

비축석유 및 비축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관련되는 법령과 규정의 준수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비축석유 : 비축을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저장된 원유 및 석유제품(휘발유, 등유, 경유) 및 LPG를 말한다.
2. 자연감모 : 선량한 관리담당자들의 충실한 근무로서도 방지할 수 없는 저장 중 증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축석유의 손실을 말한다.
3. 작업감모 : 비축유 출하(저장시설간 전량이송, 전량출하) 및 유조차에 의한 입·출하 작업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축석유의 손실을 말한다.<개정 2015.7.30>
4. 재물조정 : 재고이력표의 수량과 재물조사 결과로 나타난 실제수량이 상이할 때 그 원인이 기록착오(또는 누락), 자연감모 및 송유관 등에 의한 혼유 등 관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서 직원 개인에게 변상 책임 유무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절차에 의거 그 차이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7.30>
5. 손망실 : 비축석유가 횡령, 도난 및 분실 등에 의하여 공사의 점유로부터 이탈되거나 훼손 등으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.
6. 비축시설관리 : 가용한 인력, 자금, 물자 및 기술로서 비축석유의 저장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용가능 형태로 회복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, 비축시설 관리에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, 시험, 조정, 보수, 개축 및 소규모 신축 등이 포함된다. <개정 2015.7.30>

7. 허용오차 : 비축유를 관리함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생가능한 오차로서 계측오차(유온오차·유위오차 및 물성오차를 말한다)와 용량표오차를 합한 것을 말한다. <신설 2006.12.7>

제5조(출납)

비축석유의 출납은 출납명령(통보)서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납검사)

- ① 비축석유의 수납검사(이하 "검사"라 한다)는 수량검사와 품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비축석유의 검수자는 지사 운영담당팀장 이외의 직원으로서 지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장이 따로 임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09.11.30>

제7조(관리책임의 이전)

비축석유의 출납개시는 입출하 시설의 연결점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종료는 연결점을 통과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. 출납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비축석유의 관리책임은 인계자로부터 인수자에게 이전된다.

제8조(저장관리 및 검사)

- ① 비축석유는 적극적인 안전과 보호대책으로 손실을 방지하고 품질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비축석유의 상태와 수량을 파악하고 훼손 및 손실 요인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저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저장검사는 계측검사 및 분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순환저장)

- ① 비축석유는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순환저장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30>
- ② 지사장은 저장중 또는 입고시 검사 결과 품질이 부적합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석유비축담당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30>

제10조(자연감모 및 허용오차)

- ① 연간 자연감모 허용량 및 허용오차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유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석유비축담당본부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06.12.7, 2009.11.30, 2015.7.30>
- ② 작업감모는 사안별로 비축유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, 입출하 작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6.12.7, 2009.11.30>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비축사업, 저장시설 대여 등으로 인한 공사소유가 아닌 저장유의 자연감모 허용량 및 허용오차와 그 처리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에 따른다. <개정 2006.12.7, 2009.11.30, 2015.7.30>

제11조(침전물의 발생억제)

지사장은 비축석유의 침전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물조사방법)

- ① 재물조사는 폐창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출납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때에는 개창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특별재물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③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재물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.
 1. 지사장 또는 지사 운영담당팀장이 교체되었을 때 <개정 2009.11.30>
 2. 전량출하시에 실물량의 부족이 발생할 때 <개정 2005.1.14, 2009.11.30>
 3. 재고이력표의 현재재고량이 "0"인 경우에 발견된 실물량이 제14조에 따른 허용오차량을 초과할 때 <개정 2005.1.14, 2009.11.30, 2015.7.30>
 4. 손망실의 검량을 위하여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
 5. 사장이 특별히 지시하였을 때
 6. 저장 중인 비축석유를 출고할 때와 재고량이 있는 저장고에서 비축석유를 입고시킬 때 그 입출고 전후. 다만, 공인검정기관의 검정보고서가 있을 경우는 동 보고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30>
- ⑤ 재물조사 계획, 시행, 감독, 결과보고, 재물조사 시의 허용오차량은 제14조를 따른다. <개정 2015.7.30>
- ⑥ <삭제 2015.7.30>

제13조(재물조정대상 등)

- ① 재물조사 결과 비축석유가 운영관리상 불가피한 과부족이 생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물조정을 실시한다. <개정 2009.11.30>
 1. 계측착오, 출납착오, 기록착오 및 기록누락 등의 원인에 의하여 동류품 상호간에 동일한 수량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
 2. 송유관 등에 의한 출납과정 또는 저장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생긴 혼유 등으로 인하여 동류품 상호간에 동일한 수량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<개정 2005.1.14>
 3. 기상 및 환경조건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자연감모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14조의 허용오차량을 초과한 경우. 이 경우 허용오차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재물조정을 실시하되 그 양은 제14조에 따라 정한 자연감모 허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30>
 4. 저장시설 운영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증가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제14조의 허용오차량을 초과한 경우. 이 경우 허용오차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재물조정을 실시한다. <개정 2015.7.30>
 5. 비축유의 전량출하시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. 이 경우 재물조정량은 제14조의 허용오차량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30>
 6. 원유의 저장과정에서 퇴적물이 발생하여 비축유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<개정 2009.11.30>
 7. 작업감모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 타당한 경우 <개정 2009.11.30>
- ② 제1항의 재물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<개정 2006.12.7, 2009.11.30>

- ③ 자연감모량(자연감모 허용량을 포함한다)을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재물조정을 실시한 재물조사일을 기준재고일로 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5.7.30>
- ④ 재물조정은 비축기지별 유종별 합산물량에 대하여 실시한다

제14조(허용오차량 등 산출 및 감모보충 기준)

- ① 허용오차량은 각 저장용량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반영해 유종 및 저장단위별로 산정한다. <개정 2015.7.30>
- ② 자연감모 허용량은 기준재고일로부터 재물조사시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눈 수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자연감모 허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15.7.30>
- ③ 정기재물조사결과 석유제품 감모량 누계가 기준 재고량(입고당시물량 등) 대비 연간 유종별 허용오차량 이내일 경우에는 감모보충을 생략하고 초과 될 경우에는 기준재고량까지 감모보충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7>

제15조(재물조정 범위의 특례)

- ① <삭제 2005.1.14>
- ② <삭제 2005.1.14>
- ③ 연간 자연감모 허용량 또는 허용오차를 정하지 아니한 비축유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량에 대하여는 연간 자연감모 허용량 또는 허용오차를 정할 때까지 재물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30>
- ④ 순환저장 등에서 출하펌프를 통한 정상출하가 불가능한 물량(Dead Stock)을 제외하고 출하가 완료된 시점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량에 대하여는 상환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재물조정을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09.11.30>

제16조(재물조정)

- ① 지사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정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재물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7, 2009.11.30>
- ② 위원회가 재물조정 승인신청을 심의한 결과 재물조정 처리가 부당하여 손망실 처리로 의결하였을 경우 지사장은 이를 비축석유손망실처리 절차에 따라 손망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12.7>
- ③ 재물조정이 승인되면 지사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지사 운영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재고이력표의 재고기록 수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30>

제17조(손망실책임)

- ① 비축석유의 손망실에 관한 책임의 형태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개인책임
손망실이 단일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 손망실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. 각각의 행위가 그 손망실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 2. 연대책임
손망실이 상급직위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

상급직위자는 그 손망실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.

② 비축석유의 손망실관련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행위자의 책임

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망실을 발생하게 한 직원은 그 손망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

2. 지사 운영담당팀장의 책임

지사 운영담당팀장은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3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손망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 <개정 2009.11.30>

3. 지사장의 책임

지사장은 제3조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망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망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

4. 기타 관련자의 책임 화재, 수재 및 기타 재난과 도난 및 시설의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손망실은 그 예방을 태만히 하였거나 가능한 방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손망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책임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8조(손망실보고)

① 재물조사 등에 의하여 비축석유의 손망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사운영담당팀장은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30>

② 지사장은 손망실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한계와 책임형태 및 관련입증서류를 첨부한 손망실보고서를 손망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원회 설치, 구성 및 기능)

① 비축석유의 손망실과 재물조정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사에 비축유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6.12.7, 2012.7.23>

1. 위원장 : 비축담당본부장. 다만 비축담당본부장이 유고시에는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
2. 위 원 : 관련 처·실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내
3. 간 사 : 석유비축담당부서 재고담당팀장 <개정 2009.11.30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6.12.7>

1. 비축석유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, 변상금액 및 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
2. 비축석유의 재물조정에 관한 사항
3. 비축석유의 연간 자연감모 허용량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7.30>
4. 비축석유의 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7.30>
5.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<개정 2015.7.30>

제20조(위원회 부의절차, 소집 및 의결)

① 손망실 또는 재물조정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석유비축담당 부서장은 손망실보고서 또는 재물조정승인신청서를 첨부한 부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7>

② 위원장은 부의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7>

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

위원회 부의안건 내용이 간이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<개정 2006.12.7>

④ <삭제 2006.12.7>

⑤ 감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21조(관련자의 진술)

① 위원회는 손망실 관련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면책사유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06.12.7>

② 손망실 관련자는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7>

제22조(조사반)

①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조사반을 구성, 손망실 등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7>

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조사반에 외부기관의 전문요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9.11.30>

제23조(손망실처리의 확정)

비축석유의 손망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. 다만, 손망실가액의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.<개정 2006.12.7>

제24조(변상절차 및 재심)

① 손망실처리가 변상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은 변상명령서를 발부한다.

② 변상의무자는 변상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변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결과 변상의무자의 책임없음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기납의 변상금은 지체없이 환불되어야 한다.

③ 손망실의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공사에 불리한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.

④ 손망실 변상액의 사정은 손망실 이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체가액으로 한다.

⑤ 제4항 변상액의 산정기준일은 손망실이 발생한 날로 한다. 다만, 손망실 발생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견된 날로 한다.

⑥ 손망실 관련자가 변상명령을 받은 후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상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06.12.7>

⑦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유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7>

제25조(회의록 등의 보관 및 보존)

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는 간사가 보관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12.7>

제26조(시설관리)

- ① 비축시설의 관리목표는 모든 시설물이 비축석유의 출납 및 저장관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하는데 있다.
- ② 지사장은 시설물과 운영체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측되는 결함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7조(점검 및 보수)

- ① 시설점검은 일상점검,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보수는 소규모보수, 대규모보수 및 긴급복구보수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점검 및 보수의 시기, 방법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8조(안전 및 환경)

- ① 비축석유 및 비축시설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수행은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지사장은 안전 및 환경관리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, 교육, 안전조직 구성 및 활동, 대책수립, 보고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9조(환경보전)

지사장은 환경기준, 오염도 측정, 배수, 배기, 폐기물 처리, 분쟁시 보고, 방재자재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전, 사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
제30조(보칙)

이 규정 시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ISO절차서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의 폐지)

석유비축관리규정시행세칙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<2012.7.23 회의체운영규정>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사규의 개정)

생략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